

기술사용협약서

- 공 사 명 : 경부선 삼성~남성현간 갈미터널(상) 궤도구조개량 기타공사
- 신기술(특허)명 :

특허 제 10 - 0838227호	기계화시공을 위한 고강도 속경성 프리팩트콘크리트도상 궤도 구조 및 시공방법
--------------------	---

- 발주자(갑) : 한국철도공사 대구본부장
- 신기술(특허)개발자(을)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쌍용양회공업(주), 천경기업(주)

제1조(목적) 이 협약은 『경부선 삼성~남성현간 갈미터널(상) 궤도구조개량 기타공사』에 대하여 “갑”은 발주자로서 “을”은 신기술(특허) 개발자로서 위 신기술(특허)을 위 공사의 낙찰자가 위 공사에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협약을 체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원수급자의 기술사용) 이 협약에 따라 “을”은 위 공사의 낙찰자와 기술사용 협약 체결하여 “갑”과 “낙찰자”와의 계약체결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제3조(사용범위) ① 위 공사 중 신기술(특허)이 사용되는 범위는 붙임 설계서(설계내역서 포함)에 의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신기술(특허)이 사용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제4조(세부사용협약 체결) ① “을”은 계약업무처리 시행세칙 제143조 제4항에 따라 해당부분을 하도급으로 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을”은 기술사용료를 지급받는 것을 포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을”이 “낙찰자”와 하도급으로 시행하는 경우 “을”은 하도급 범위에 대하여 적정한 공사금액(“신기술(특허)공법”보유자”가 “낙찰자”로부터 하도급 받는 경우 하도급부분에 해당하는 예정가격에 원도급공사의 낙찰률(낙찰률이 80%미만인 경우에는 80%)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과 동 금액에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에 의한 기술사용료를 더한 금액의 범위에서 낙찰자와 기술보유자간 합의한 금액)을 기준으로 “낙찰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제6호에 의한 부당한 하도급대금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제5조(세부사용협약 체결) 위 공사의 낙찰자와 “을”은 이 협약의 범위 및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세부사용협약서를 작성하여 사용협약을 체결한다.

제6조(설계변경 등) 위 공사에 포함된 신기술(특허)과 관련하여 제6조에 따라 “을”의 귀책사유로 세부사용협약서의 체결이 되지 아니하거나, 세부사용협약서가 체결된 경우라도 “을”이 계약상의 선량한 권리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계약이행에 차질을 빚거나, 공사품질 확보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갑”은 다른 신기술 등으로 설계변경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을”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7조(주요자재 품질관리) 위 공사에 포함된 신기술(특허)과 관련하여 공사착공 후 신기술(특허) 자재 반입 전에 본 기술사용협약서 체결일 이후 발행한 품질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 법규 및 설계서(시방서) 기준과 부적합한 자재사용시 시공중·준공이후 모든 책임을 지도록 한다.

제8조(특칙) 본 협약서의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는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2019년 08월 12일

“갑” 한국철도공사 대구본부장 (인)

“을”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인)

“을” 쌍용양회공업(주) (인)

“을” 천경기업(주) (인)



발급번호 : 2-5-2015-019331495

특허증

CERTIFICATE OF PAT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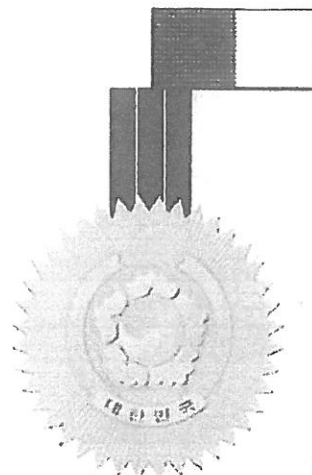
특 허 제 10-0838227 호
Patent Number

출원번호 제 10-2007-0037034 호
Application Number

출원일 2007년 04월 16일
Filing Date

등록일 2008년 06월 09일
Registration Date

발명의명칭 Title of the Invention
기계화 시공을 위한 고강도 속경성 프리펙트 콘크리트 도상제도 구조 및 시공방법



특허권자 Patentee
등록사항란에 기재

발명자 Inventor
등록사항란에 기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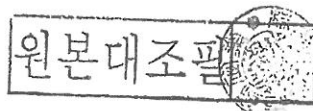
위의 발명은 「특허법」에 따라 특허등록원부에 등록되었음을 증명합니다.
This is to certify that, in accordance with the Patent Act, a patent for the invention has been registered at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2015년 03월 03일

특허청장
COMMISSIONER,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김영민



발급일자 : 20150303